

| | |
|--------------|--------------------|
| 의안번호 | 제 798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8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 |
|-------|--------------|
|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6인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

충청북도 저소득 범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798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발 의 자 : 박봉순, 최광옥, 연철흙,
박한범, 이연구, 임병운

1. 제정이유

- 저소득 범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출소자들의 재범죄를 예방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저소득 범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저소득 범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저소득 범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저소득 범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자치행정과 협의함

나. 예산조치 : 관계없음.

라. 입법예고 : 2018. 3. 2 ~ 3. 12(10일간)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범죄예방과 충청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관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 행 준